

의안 번호	1385	【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9. 6.(수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9.(화)

2. 제안이유

「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·지원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질 높은 관광안내를 제공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계획 수립, 홍보,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- 다.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)
- 라.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)
- 마.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)
- 바. 관광진흥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27조)

4. 근거법규 :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 및 제76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사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하고, 관광객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해 관광안내소 설치, 문화관광해설사 운영,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으로,
- 우리 구의 관광자원 개발,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국내·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
큰 거 법 규

관광진흥법

제76조(재정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,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<개정 2008.2.29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·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